

인천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가단2014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귀옥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소슬

피고A

변론 종결2021. 3. 10.

판결 선고2021. 4. 1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5. 3. 19.자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19,673,0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673,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유한회사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6342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6. 'B은 C 유한회사에게 17,936,439원 및 이 중 5,073,233원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11. 24. 확정되었다.

나. C 유한회사는 2018. 12. 27. B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의 B에 대한 위 채권액은 2020. 1. 8. 기준으로 합계 19,673,060원이다.

다. 피고의 배우자이자 B의 부친인 D는 1998. 5.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D는 2015. 3. 19. 사망하였다. D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자녀인 B, E, F, G, H, I이 있었는데, 피고는 D 사망 후 2015.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상속인들이 2015. 3. 19.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및 D가 소유하였던 전남 곡성군 J 토지에 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신용카드대금 채무로서 C 유한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5. 11. 10. 위 토지에 대하여도 2015. 3.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4. 11. 29. 채무자 H, 채권최고액 4,680만 원, 근저당권자 K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2019. 11. 1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C 유한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7,936,439원 및 이 중 5,073,233원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상속재산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이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2015. 3. 19.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와 B 사이에 2015. 3. 19.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중 B의 상속분인 2/15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D가 20여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이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노모에 대한 봉양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로서는 거주지가 다른 B의 채권채무관계를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B의 주소는 B이 이 사건 부동산과 L아파트 M호로 주소를 옮긴 2004. 11. 26.부터 2005. 2. 11.까지를 제외하면 2000. 5. 2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동일하고, 달리 B이 위 주소와 다른 곳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D가 소유하였던 전남 곡성군 J 토지에 대하여도 2015. 3.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B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참조).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참조). 근저당권 말소 등의 사유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부동산 가액 -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D의 상속인들이 2015. 3. 19. 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B의 상속지분인 2/15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위 협의분할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압류등기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나)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20. 2.경 1억 9,000만원인 사실, 2015. 3. 19.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K 주식회사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2,4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현재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 종결 당시 시가 1억 9,000만 원에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위 근저당권의 위 사해행위 당시 피담보채권액 2,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6,600만 원(= 1억 9,000만 원 - 2,400만 원) 중 B의 상속분 2/15에 해당하는 22,133,333원(= 1억 6,600만 원× 2/15, 원 미만 버림)이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이 된다. 한편, 이 사건 변론 종결일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7,936,439원 및 이 중 5,073,233원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568,585원 합계 20,505,024원이 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나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0,505,024원을 한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3. 19.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673,060원의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9,673,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인혜

별지